

工業所有權 相談解說

職務發明에 대한 補償 및 勤勞契約 등

- 問** ① 會社에 勤務하는 職員으로서 勤務中에 한 發明은 모두 會社의 發明으로 되는지, 제가 努力한 對價는 어떻게 補償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 ② 他研究所에서 勤務하던 職員을 特別採用했을 때 職務發明과 관련한 勤勞契約締結時 留意事項을 알고 싶습니다.
- ③ 雇傭關係에 있지 아니한 關係에서 受託에 依하여 開發한 技術成果의 處分에 關한 約定時 유의할 事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職務發明에 대한 補償

答 ① 會社에 勤務하는 職員이 勤務中에 職務와 關聯하여 發明하였을 때 이 發明이 會社의 業務範圍에 屬하는 發明일 때는 職務發明으로 取扱하여 社內 職務發明等의 規程에 따라 處理하게 되며 그 對價로 發明者에게 상당한 補償金을 支給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發明者가 받을 수 있는 補償金에 對하여는 會社의 職務發明規程등 社規에 規定되어 있으며 支給되는 補償金의 內容은 다음과 같습니다.

- 特許出願을 하였을 때 發明을 創作한 수고를 참작하여 支給하는 出願補償
- 發明이 登錄되었을 때 그 發明의 優秀性 및 會社内外에서의 活用價值 등을 참작하여 支給하는 登錄補償
- 登錄된 發明을 實施하는 경우 그 活用의 實績에 따라 支給하는 實績補償
- 登錄된 發明을 會社가 處分하였을 때 그 對價를 참작하여 支給하는 處分補償

職務發明과 勤勞契約

② 他研究所에서 勤務하면 職員을 特別採用할 경우 採用하는 新規職員과 따로 特別히 勤勞契約을 締結하지 않는 한 新規職員이면 既存職員이면 간에 當該 會社의 職務發明規程, 就業規則 또는 團體協約等에 모두 義務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他研究所에 勤務하면 職員으로서 그 比重이 큰 경우에는 事後의 紛爭을 未然에 防止하기 爲하여 特別約定을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入社前에 既取得한(또는 出願한) 工業所有權의 活用方案에 관한 事項이나 既知得한 知識와 經驗을 바탕으로 入社後에 새로운 工業所有權을 創作하였을 때 그 歸屬問題 등 앞으로 豫想되는 發明中 職務發明의 要件를 充足 시키지는 못하나 會社業務와 밀접한 관係이 있는 發明에 對한 處理問題 등을 詳細히 約定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受託技術의 處分

③ 雇傭關係에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受託에 依하여 開發한 技術의 成果는 職務發明規程이 適用될 수 없기 때문에 當事者間에 따로 約定을 하여 開發 技術의 成果인 工業所有權의 歸屬 등을 規定하여야 합니다.

一般的으로는 對價를 支給받고 技術을 開發한 者는 技術開發의 成果와 함께 그에 수반하는 工業所有權도 發注者에게 提供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直接적인 開發成果이 외에 그 成果를 利用한 관계 工業所有權의 歸屬問題과는가 約定期間終了後 一定期間內에 開發한 技術成果에 對한 處分도 約定 당시에 명확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8>

<金永吉(辨理士·金永吉 國際特許法律事務所長)>